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37조제1항이 개정('22. 2. 3. 공포 및 시행)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장애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상이유족연금 청구 및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제출 대상 연령과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대상 연령을 변경하고,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장애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진단서 제출 대상 연령 변경(안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제1항제3호)
-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제출 대상인 장애가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변경함.
- 나.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대상 연령 변경(안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)

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의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대상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, 장애가 있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가 해소된 경우 상이유족연금 수급권 및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대상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변경함.

다.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완(안 제9조제1항, 안 제11조제4항, 안 제16조제1항제2호, 안 제19조제1항 및 제4항, 안 제63조제11호) “육군·해군·공군”을 “육군·해군·공군(이하 “각 군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봉급월액이증가한”을 “봉급월액이 증가한”으로, “국방부장관(사망보상금 환수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”를 “국방부장관이”로, “법 제52제1항”을 “법 제52조제1항”으로, “국방부장관(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)”을 “국방부장관(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, “제3항 따른”을 “제3항에 따른”으로 변경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5. 4.~2022. 6. 14.)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육군·해군·공군”을 “육군·해군·공군(이하 “각 군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봉급월액이증가한”을 “봉급월액이 증가한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2호 중 “국방부장관(사망보상금 환수의 경우에는 국가 보훈처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”를 “국방부장관이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법 제52제1항”을 “법 제52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국방부장관(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”를 “국방부장관(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제3호 중 “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”를 “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”로 한다.

제39조제1항제3호 중 “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”를 “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”로 한다.

제41조제1항제3호 중 “미성년자로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”를 “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19세”를 “25세”로 한다.

제63조제11호 중 “제3항 따른”을 “제3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) ① <u>육군·해군·공군</u>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이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청 구하면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, 복무기간, 그 밖에 군인 또는 군 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·확인하여 이를 국 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결정하는 급여의 경우는 제외한다.	제9조(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) ① <u>육군·해군·공군(이하 “각 군” 이라 한다)</u> 참모총장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) ①~③ (생 략)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 진급, 보직변경 등으로 <u>봉급 월액이증가한</u> 후 해당연도에 상 이연금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「군인연금 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, 순직유족연금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	제11조(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 진급, 보직변경 등으로 <u>봉급 월액이 증가한</u> 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
의 부분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
한 금액으로 한다.

제16조(급여의 환수)

① (생 략)

1. (생 략)

2. 환수비용: 급여의 환수에 관
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
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(사
망보상금 환수의 경우에는 국가
보훈처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
에서 같다)이 산정하는 금액

②~⑦ (생 략)

제19조 (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
등)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2제
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
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
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
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·이
혼·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
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
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~③ (생 략)

④ 국방부장관(제61조제1항부
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
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

제16조(급여의 환수)

①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국방부장관이

②~⑦ (현행과 같음)

제19조 (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
등)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2조
제1항에 따라 -----

②~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국방부장관(제61조제1항부
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
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

를 포함한다)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.

⑤ (생략)

제38조(상이유족연금의 청구)

① (생략)

1. ~ 2. (생략)

3.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(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②~③ (생략)

제39조(순직유족연금·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)

① (생략)

1. ~ 2. (생략)

3.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(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가 19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만

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상이유족연금의 청구)

① (현행과 같음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상이

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

손자녀가 25세-----

②~③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순직유족연금·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)

① (현행과 같음)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(순직

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

시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

자녀가 25세-----

해당한다)	----- -----
②~③ (생략)	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41조 (상이유족연금 수급권·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) ① (생략)	제41조 (상이유족연금 수급권·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<u>미성년자로서</u>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<u>19세</u> 가 된 경우: 본인	3. <u>자녀 또는 손자녀로서</u>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<u>25세</u> ----- -----
4. 장애가 있던 <u>19세</u>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애가 해소된 경우: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	4. ----- <u>25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3조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	제63조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제19조제2항 및 <u>제3항</u>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	11. 제19조제2항 및 <u>제3항에</u> --- -----
12. ~ 15. (생략)	12. ~ 15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	
연 락 처	(02) 748 - 6851